

# 2022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

-2022년 8월,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팀-

구 분	현 행	세법개정안	건의안	건의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통합투자세액공제 지원 확대 (조특법)	•당기분 기본공제 + 투자증가분 추가공제  •(기본공제) : 당해연도 투자액 × 기본공제율 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공제율(%)</th> </tr> <tr> <th>대</th> <th>중견</th> <th>중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 반</td> <td>1</td> <td>3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3</td> <td>5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6</td> <td>8</td> <td>1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공제율(%)			대	중견	중소	일 반	1	3	10	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	국가전략기술	6	8	16	•(기본공제) <b>공제율 상향</b> 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공제율(%)</th> </tr> <tr> <th>대</th> <th>중견</th> <th>중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 반</td> <td>1</td> <td>5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3</td> <td>6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8</td> <td>8</td> <td>1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공제율(%)			대	중견	중소	일 반	1	5	10	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국가전략기술	8	8	16	•(기본공제) <b>공제율 상향</b> 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구 분</th> <th colspan="3">공제율(%)</th> </tr> <tr> <th>대</th> <th>중견</th> <th>중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일 반</td> <td>3</td> <td>7</td> <td>10</td> </tr> <tr> <td>신성장·원천기술</td> <td>5</td> <td>9</td> <td>12</td> </tr> <tr> <td>국가전략기술</td> <td>8</td> <td>12</td> <td>16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공제율(%)			대	중견	중소	일 반	3	7	10	신성장·원천기술	5	9	12	국가전략기술	8	12	16	-중견기업 설비투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로, 탄소중립, ESG경영확산 등 에너지·환경·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에서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에 따라 세제지원이 오히려 축소 (5%→3%)되어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* 통합투자세액공제 개편으로 중소·중견기업 격차가 7%로 증가(개편 전 투자시설별 1~5%)  -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책으로 중견·대기업은 세액공제를 선호하고 있어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시 중견기업의 정책만족도가 크고, 중소· 중견 간 지원절벽 완화에 따른 중소→중견 성장 유인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
구 분	공제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견	중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 반	1	3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3	5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6	8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공제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견	중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 반	1	5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3	6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8	8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 분	공제율(%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대	중견	중소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일 반	3	7	1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신성장·원천기술	5	9	12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국가전략기술	8	12	16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가업승계 시 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(상증법·조특법)		•<신설> <b>중소기업</b> 에 한해 가업승계를 받은 상속인 등이 <b>양도·상속·증여시까지 상속·증여세                      납부유예</b>	•중소기업→중소· <b>중견기업</b>	-상속·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구 분	현 행	세법개정안	건의안	건의내용											
가업상속 연부연납 대상 확대 (상증법· 국세징수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대상)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(매출액 5천억원 미만)</li> <li>▶ (피상속인) 지분 및 기업종사 요건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지분) 최대주주 &amp; 지분 50% 이상(상장법인 30%) 5년 이상 계속 보유</li> <li>- (기업종사) 5년 이상 경영 + 대표이사 등 재직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li>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8 660 750 836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적용방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</td> <td>10년 또는 3년 가지 7년 분할납부</td> </tr> <tr> <td>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</td> <td>20년 또는 5년 가지 15년 분할납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	구 분	적용방식	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	10년 또는 3년 가지 7년 분할납부	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	20년 또는 5년 가지 15년 분할납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50% 이상(상장법인 30%) → <b>40% 이상(상장법인 20%)</b></li> </ul> </li> <li>연부연납 기간 확대              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63 660 1176 836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적용방식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</td> <td rowspan="2"><b>20년 또는 10년 가지 10년 분할납부</b></td> </tr> <tr> <td>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/ul> <p>*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관계없이 적용</p>	구 분	적용방식	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	<b>20년 또는 10년 가지 10년 분할납부</b>	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연부연납 시 비상장주식 납세 담보 허용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국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금전, 유가증권, 토지 등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나, 비상장주식은 담보에서 제외되어 비상장사가 제도를 활용하는데 애로</li> <li>- 비상장주식은 과세대상인 반면 납세담보로는 불인정되어 납세의무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</li> </ul>
	구 분	적용방식													
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	10년 또는 3년 가지 7년 분할납부														
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	20년 또는 5년 가지 15년 분할납부														
구 분	적용방식														
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미만	<b>20년 또는 10년 가지 10년 분할납부</b>														
가업상속재산 비율 50% 이상															
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(소득세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원천징수대상) 매월</li> <li>- (상용근로소득) 매반기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원천징수대상) 좌동</li> <li>- (상용근로소득) <b>매월</b></li> <li>- (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) <b>매월</b>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b>현행 유지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출기한을 단축하는 것은 기업의 정기제출에 대한 시간적·금전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재검토 필요</li> </ul>											

구 분	현 행	세법개정안	건의안	건의내용
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(조특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중견기업 기준 :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3천억원 미만 → <b>전체 중견기업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중견기업 성장부담 완화를 위해 중견기업 구간을 설정하여 세제지원 중이나 대부분 매출액 3천억원 미만으로 한정</li> <li>-중견→중소 회귀 검토요인 1순위가 '조세혜택'으로, 매출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은 중견기업의 세부담을 증대시키고 성장을 저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</li> <li>*실제로 매출액, 영업이익,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지표 상 매출액 3천~5천억원 미만 기업의 성장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</li> <li>-동일기업군을 매출액으로 나누어 지원을 차별하는 것은 중견기업이 유일하며, 이는 기업 간 조세형평에 위배됨</li> <li>-또한, 대기업-중견기업 간 경영실적 차이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액 3천억원 이상 중견기업을 대기업과 동일하게 분류하는 것은 불합리</li> </ul>
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 공제 대상 확대 (조특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신성장·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</li> <li>-중소 30~40%, 중견* 25~40%, 대 20~30%</li> <li>*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중견기업 지원대상 확대</li> <li>-5천억원 미만 코스닥 상장기업</li> <li>→ <b>5천억원 미만 전체 중견기업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신산업 성장동력 확보 및 기술력 강화를 위해 신성장·원천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여 R&amp;D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나 비상장기업이라는 이유로 대기업과 동일하게 분류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려움</li> </ul>

구 분	현 행	세법개정안	건의안	건의내용
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(당기분) 공제율 상향 (조특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(당기분) -중소 25% 중견 8~15% 대 최대 2%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-8~15%→<b>13~20%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우리나라 민간 연구개발비 비중은 주요국 중 가장 높은 수준(80.3%)으로, 특히 대내외 경영환경 악화로 설비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투자는 증가 추세를 나타냄</li> <li>-중견기업 진입연차에 따라 세액공제 지원규모가 급격히 축소*되는 세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중견기업의 기술력 강화를 촉진하고 민간 중심의 R&amp;D 투자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</li> <li>*중소25%→중견1~3년 15%→4~5년 10%→6년~ 8%</li> <li>**중견기업 공제율 5% 상향시 생산유발효과 8.8조원 취업/고용유발인원 각각 13만9만명 추정</li> </ul>
상속세율 인하 (상증법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최고세율 50%</li> </ul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<b>최고세율 인하</b> 또는 <b>자본이득세 도입</b>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(50%)은 OECD 국가 중 세계 2위 수준으로, 기업승계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보다 매각을 고려하는 상황 발생</li> <li>*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 15%</li> <li>-세계 각국은 자국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부유출 방지를 위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상속세 완화 추진 필요</li> </ul>

구 분	현 행	세법개정안	건의안	건의내용
<p>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(조특법)</p>	<p>•청년 등*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해 3년간 소득세 90% 감면 * 60세 이상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은 70% 감면</p>		<p>•소득세 감면대상 확대 -중소기업→<b>중견기업</b></p>	<p>-기업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우수 인재 영입이 필수적이나 중견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, 구직자 제조업 기피현상 등으로 고질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음 -기업의 구인난 및 근로자 간 임금 양극화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</p>